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박 민 규\*

## A Study on the IUU Governance System of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jor State

Min-Gyu Park\*

### < 목 차 >

I. 서 론	1.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II. 지역 수산 관리 기구의 IUU 통제 제도	2. 전 세계적 항만국 조치 시행 대비
1. 항만국 통제	3. 동아시아 항만국 조치 협정 체결
2. 어획증명서 제도	4. 통합 RFMO IUU 선박 목록 및 어획증명서 발급 제도 구축
3. 선박 목록의 채택과 공유	5. 한국의 EU IUU 규칙 이행관련 제도 개선
III.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참고문헌
1. 미국	Abstract
2. EU	
IV. 결론 및 정책건의	

### I. 서 론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어업은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영위와 수산 자원의 관리와 보존, 해양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sup>1)</sup>. IUU어업은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감시하고 적발하기 어렵다.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IUU 어업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어획량의 30%를 차지하

접수 : 2010년 11월 28일    최종심사 : 2010년 12월 24일    게재확정 : 2010년 12월 27일

<sup>1)</sup>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 「FAO 항만국 조치 협정 국내 이행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된 것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Corresponding author : 032-860-7803, trade@inha.ac.kr)

1) FAO, Database on Port State Measures <<http://www.fao.org/fishery/psm/en?>>(2010년 11월 1일 검색)

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sup>. 미국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90~120억 불의 불법어획물이 거래되고 있다<sup>3)</sup>. IUU 어선들은 단속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을 이용하거나 선박 기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지만, 근해 또는 공해에서 기국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조업한다. 공해와 EEZ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은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조직과 연관된 경우도 많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원보존 및 관리에 역행하는 IUU 어업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였다. IUU 근절은 선박기국, 연안국 그리고 항만국 조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3년 FAO 이행협정, 1995년 유엔 공해어업협정(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에 IUU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포함한 IUU 통제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포함했다.

유엔 해양법협약과 유엔 공해어업협정 채택 이후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of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FI)에서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할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99년 3월 수산업에 관한 FAO 각료급회의에서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FAO가 행동규범 제4조에 규정된 대로 각국, 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같은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편의치적” 어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다룰 국제행동계획을 성안할 것을 선언하였다. 세계 각국의 2년간의 노력 끝에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POA-IUU) 초안이 2001년 2월 23일 FAO 기술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COFI에서는 2001년 3월 2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FAO는 UNFSA, FAO 이행 협정과 IPOA·IUU 채택으로 항만에서 IUU 통제를 위한 기준 설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OFI에서는 2005년 3월 기본적인 최저 수준의 항만국 통제 모델 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FAO 회원국들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항만국 통제 협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COFI에서는 2008년 초 협정 초안을 마련하여 2008년 6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최종 안을 마련하였다.

세계 각국들은 불법어업을 통제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선박 기국이지만 수입국과 연안국 항만국 통제가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시장관련 조치와 항

2) Bray, K., *A Global Review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2000.6. <[www.fao.org/DOCREP/005/Y3274E/y3274e08.htm](http://www.fao.org/DOCREP/005/Y3274E/y3274e08.htm)>(2010년 11월 1일 검색)

3) US Department of St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http://www.state.gov/g/oes/ocns/fish/illegal/>>(2010년 11월 검색)

만국 통제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6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미국 수산청에 IUU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국제수산관리기구를 통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IUU 어업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제도 (Catch Documentation Schemes, CDS)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와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IUU 통제 제도를 살펴본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조치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구별 조치를 통합하여 살펴보는 접근방법(vertical approach)보다는 항만국 조치, IUU에 관한 시장관련 조치, IUU 선박 목록 작성 등 주요 통제 수단별(sectoral approach)로 RFMO가 취한 조치를 살펴본다. 항만국 조치 가운데 2009년 채택된 FAO의 항만국 조치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국제 수산계에서 IUU 어업관련 여러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IUU 통제 법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 II. 지역 수산 관리 기구의 IUU 통제제도

IPOA-IUU에서는 각국들은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를 통해 IUU 어업 행위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2006년 맥너슨 스티븐스 수산 보존 및 관리 재승인 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MSRA는 미국 수산청(NMFS))에 RFMO를 통해 IUU를 통제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sup>4)</sup>. 구체적인 수단으로 다자 시장관련 조치(multilateral market-related measures) 마련<sup>5)</sup>, 선박목록 채택(adoption of lists)<sup>6)</sup>, 보다 강력한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s)의 시행<sup>7)</sup>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MSRA에 따라 다음에서 설명하는 RFMO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연안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수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는 RFMO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등 11개의 지역수산기구가 IUU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CCAMLR, 북서 대서양 어업위원회(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AFO) 등은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진 EEZ 밖의 서식 어종과 고도 회유성 어종을 제외한 어종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수산기구이고 남방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아메리카 열대 참치 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국제 대서양 참치 보존 위원회

4) 16 USC 1826i.

5) Ibid. (1)(A).

6) Ibid. (1)(B).

7) Ibid. (1)(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인도양 참치 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sup>8)</sup>)는 고도 회유성 어류에 관한 지역수산기구이다.

## 1. 항만국 통제

항만국 통제는 IUU를 통해 잡은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FAO 수산위원회(COFI)는 2005년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모델 계획'을 발표했다. 항만국 조치의 내용은 항만 접근 금지, 어획물의 양륙·전재·가공의 금지, 불법 어획물의 압류와 몰수, 연료 급유·선용품공급·선박수리 등 항만 서비스의 금지, 불법어획물의 판매·거래·매입·수출·수입의 금지, 법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절차의 개시, 집행과 예방을 위한 기국과 RFMO 회원국의 협력을 포함한다<sup>9)</sup>.

FAO를 포함한 국제 수산관리기구는 항만국 조치를 수행하는 개도국의 인적 능력 개발을 위해 2006년 이후 5개 지역에서 항만국 조치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FAO는 2006년 태평양 FFA 국가를 대상으로 항만국 조치에 관한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FAO, IOC, IOTC 등은 2007년에 모리셔스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공해 IUU어업에 대한 태스크 포스와 2006년 UN 어업협정 검토회의에서는 강화된 항만국 조치를 권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FAO COFI는 2007년 3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기술 협의를 4회 실시하여 2009년 FAO COFI 회의에서 최종 협약에 합의했다.

ICCAT는 항만 검색과 양륙, 환적, 쿼터 이행 점검과 기타 보존 조치, 자료와 정보수집에 관한 검사관 가이드를 위한 최소 기준을 수립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sup>10)</sup>. 비회원국이 어획한 모든 어종을 검사한 결과, 해당 어종이 ICCAT 보존 조치에 해당하는 어종이고 심각한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박이 어종이 협약 수역 밖에서 어획하였거나 보존 조치와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어획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륙과 전재가 금지된다. ICCAT에서는 동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와 같은 특정 어종에 대한 강화된 항만 검색 요건을 채택했다.

8) 중서태평양수산협약은 2000년에 채택이 되었으며 2004년에 발효되었다. 25개 회원국이 있으며, 7개의 참여 영토, 2개의 협력적 비회원국이 있다.

9) Swan J., Port State Measures To Combat IUU Fish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Ocean and Fishery LAW, N · m. VII - 1, September 2006 <[http://vlex.com/source/sustainable-development-law-policy-1620/issue\\_nbr/%23VII-1](http://vlex.com/source/sustainable-development-law-policy-1620/issue_nbr/%23VII-1)>

10) ICCAT Recommendation 97 - 10.

항만국조치는 IUU어업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인 조치임이 증명이 되었다<sup>11)</sup>. 북동대서양 어업위원회(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EAFC)<sup>12)</sup>는 항만국 통제를 통해 불법어업의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둔 RFMO이다. NEAFC의 IUU 통제 제도는 비회원국 선박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와 항만국통제제도가 있으며, 회원국들은 자체 항만국 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만국 통제 제도는 2007년 5월 1일부터 도입했다. NEAFC 통제와 집행제도 제5장에 외국 어선의 항만국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국 통제는 체약국의 항만에서 외국어선이 협약 수역에서 어획하여 선적하고 있고 이전에 양륙이나 환적을 하지 않은 냉동 어획물에 대하여 적용한다<sup>13)</sup>. 체약국은 양륙과 환적이 허용되는 항만을 지정해야 한다. 변경 15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무국은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sup>14)</sup>. NEAFC 웹사이트에는 체약국 국가별로 지정한 항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장이나 대표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입항예정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체약국은 조업장과 항만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다른 통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입항 통지를 할 때에는 부속서 15의 양식 A 부분을 첨부해야 하는데 'PSC 1 양식'은 어선이 직접 양륙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PSC 2 양식'은 환적 작업을 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공여선박은 각각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sup>15)</sup>. 입항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입항 예정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입항 통보 및 취소 통보 사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선박기국과 공여선박 기국에 통보한다.

선박기국 또는 환적을 한 경우 공여선박의 기국은 부속서 양식 B에 어선이 어획한 것이 충분한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선에 적재된 양이 보고되었는지, 어업 허가를 가졌는지 등의 여부를 VMS 자료를 통해 해당 선박이 어획을 했다고 한 수역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sup>16)</sup>. 항만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선박기국의 확인을 받은 후 허가를 한 뒤 양륙과 환적을 할 수 있다. 항만국은 기국의 확인이 없는 경우 일부의 양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분리된 장소에 저장하도록 해야 한다. 기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판매, 운송, 양도를 허용한다. 14일 이내에 확인을 받지 못하면 어획물을 몰수하고 항만국 법에 따라 처리한다<sup>17)</sup>. 항만국은 양륙을 허가 또는 거부할지를 지체 없이 선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에 양식 C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이런 정

11) <[www.dfo-mpo.gc.ca/overfishing-surpeche/isu-iuu-09a-eng.htm](http://www.dfo-mpo.gc.ca/overfishing-surpeche/isu-iuu-09a-eng.htm)>(2010년 12월 25일 검색)

12) 덴마크, 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가 회원국이며,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벨리즈가 협력적 비회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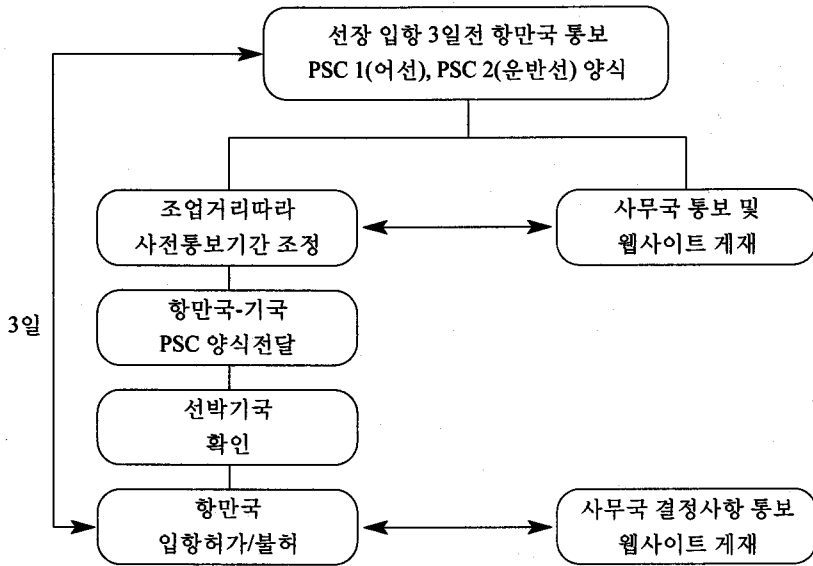
13) NEAFC, Scheme of control and enforcement, London 2010, art 20.

14) Ibid. art. 21.

15) Ibid. art. 22(2).

16) Ibid. art. 23(1).

17) Ibid. art. 23(3).



〈그림 1〉 NEAFC 외국어선 항만국 통제 절차

보를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검색관은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협약이 정한 권고사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만국은 다른 체약국의 검색관을 초청하여 검색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체약국은 양륙과 환적 물량의 15% 이상을 검색해야 한다<sup>18)</sup>. 그러나 NEAFC 홈페이지에는 각 항만당국은 양륙량의 25% 이상을 검색을 것으로 되어 있다<sup>19)</sup>. 항만국 검색을 마친 당국은 부속서 16의 검색 보고서(PSC 3)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검색관과 선장이 사인하고 선장에게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기국, 공여국, 사무국에 전달된다. 검색을 당한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항만국은 보고서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검색 사본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모든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례 통제 및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EAFC 항만국 통제 제도는 큰 문제 없이 도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항만당국은 합법적인 어획물의 품질 저하나 판매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준수했다. 이 조치는 유럽으로 유입되는 불법 냉동 어획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유럽 시장에서 불법 어획물의 수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NEAFC 웹사이트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 조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비회원국 선박 블랙리스트 제도는 2005년에

18) Ibid. art. 25(1).

19) NEAFC 홈페이지 <<http://neafc.org/>>(2010년 11월 26일 검색).

도입했다. 통제 및 집행제도는 A 관찰 목록과 영구적인 B 목록이 있다. 2010년 12월 기준 A 목록에는 선박이 없으며, B 목록에는 11척의 선박이 등재되어 있다. 회원국은 비회원국 선박이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정보를 모든 회원국과 관련 지역 수산관리기구에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설명과 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어업이 확인될 경우 등록의 말소나 어업허가 취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IUU 추정 선박 기구로부터 만족할만한 답을 받지 못한 경우 선박은 관찰목록에서 영구목록으로 옮겨진다. 영구목록에 있는 선박은 NEAFC 회원국 항만의 접근이 거부되고 항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NEAFC는 NAFO와 SEAFO와 IUU 목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한국,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항만 접근이 거부된다.

IUU 어선 목록 등재가 어선에 미치는 영향은 NEAFC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까지 26척의 선박이 NEAFC B(IUU 어선 확정) 목록에 등재되었는데, 모두 해체되거나 조업을 포기하고 1척만이 IUU어업을 다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3척은 NEAFC 수역을 떠났고, 5척은 행방을 알 수 없다. 8척은 해체되었으며, 3척은 여러 해 동안 항만에 정박해 있고, 3척은 목록으로부터 제외되었다. NEAFC는 IUU 목록에 운반선을 포함한 것이 협약 수역에서 IUU 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1〉 NEAFC B 목록 선박의 현황

	선박의 종류	
	운반선	어선
해체		8
항만 장기간 정박		4
침몰	1	1
조업 목격		1
미상		5
수역 밖에서 조업	1	2
목록 제외	2	1
계	5	21

## 2. 어획증명서 제도

무역과 시장관련 다자 조치(multilateral market-related measures)는 IUU 제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시장 접근을 차단하여 IUU 어업 행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성공적인 시장 조치를 위해서는 무역 추적 프로그램(trade tracking schemes)과 어류 제품의 출처·중량·종류와 보존 및 관리조치에 의하여 어획한 것인지 증명하는 어

획증명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적 시스템에 근거하여 RFMO는 위반 선박과 국가에 대하여 양륙과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FMO 가운데 ICCAT, CCAMLR, IATTC 등이 무역 추적과 어획 증명 서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CCAT는 1992년에 냉동 제품의 수출자가 참다랑어 어획 장소와 어선의 기국을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참다랑어 통계 서류 프로그램(Bluefin Tuna Statistical document program)을 개발했다. ICCAT는 1993년에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ICCAT는 2004년부터 무역 추적 프로그램(trade tracking programs) 검토 절차를 시작하여, 2007년부터 어선으로부터 판매시점까지 추적하는 참다랑어 어획 서류 제도 수립을 위한 권고를 채택했다.

ICCAT는 무역관련 제도를 마련한 최초의 RFMO이고, 위반국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RFMO이다. 참다랑어 행동 계획(1994)을 수립하였고, 청새치 행동계획(1995), 비보고, 비규제 어획 결의(1998)를 통해 ICCAT의 보존 조치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위반국가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시장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했다. ICCAT는 2003년에 3개의 무역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ICCAT 무역 조치 결의(Resolution on Trade Measures)라는 하나의 제도로 만들었다. 2003년 결의는 적법절차 규정과 평가에 필요한 비교표준 절차를 확립하여 제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였다. ICCAT 제도는 IUU 수산물의 수입·양륙·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ICCAT의 조치는 2006년 구속력을 갖게 되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2006년 ICCAT 무역 조치 관련 권고는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권리·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 채택되고 이행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적도 기니가 1998년 비보고 비규제 결의에 따라 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무역 관련 조치는 비회원국에 대한 것이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고 있다.

CCAMLR에서는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박 기국으로 하여금 협약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2000년부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어획 서류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빨고기의 양륙과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이후 어획 서류제도는 계속 강화되고 개선되었다. CCAMLR 회원국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불가항력, 구조하는 경우가 아니면 IUU 목록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 접근을 거부할 수 있고, 회원국에 이빨고기의 수입·수출·재수출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자, 운송자 또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은 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과의 거래나 환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체약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 편의치적 선박으로부터 양륙이나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 3. 선박 목록의 채택과 공유

선박목록(vessel lists)은 집행 당국이 해당 선박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전체 허가 선박목록(positive list)은 대부분의 RFMO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박 목록과 관련하여 최신의 선박 목록 유지, 선적국 변경, 편의치적 관리 문제가 대두한다. IUU 선박 목록(negative list)을 유지하는 RFMO는 CCAMLR, IATTC, ICCAT, NAFO, WCPFC이다. 이들 RFMO는 IUU와 지원 선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대부분의 RFMO는 IUU 선박들에 대하여 무역 제한 조치(trade restrictive measure)를 포함하고 있다.

ICCAT는 2002년부터 조업 선박목록과 IUU 선박 목록을 만들었다. 각 당사국은 매년 ICCAT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도록 허가를 받은 선박 목록을 제출한다. 사무국은 매년 모든 선박 목록을 작성하여 ICCAT 웹사이트(<http://www.iccat.int>)에 공시한다. 선박목록에는 2010년 11월 기준 13,996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ICCAT IUU 선박 목록(<http://www.iccat.int/en/IUU.asp>)은 다른 RFMO의 IUU목록과 함께 게시한다<sup>20</sup>. ICCAT 선박목록은 24미터 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9년부터 20미터 이상의 대형 선박을 포함한다<sup>21</sup>. 20미터 이상의 선박이 ICCAT 선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ICCAT 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다.

IUU 선박 목록은 각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다. 정보가 수집되면 정식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IUU 선박 목록을 채택한다. 2009년 연례 회의에서 채택된 IUU 목록에는 2009년에 포함된 4척을 포함해 25척의 선박이 등재되어 있다. IUU 목록에 포함되면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입항, 수입, 양륙, 환적, 연료 및 선용품의 공급 금지를 포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한다. 2002년 조치에 따라 일반 선박은 IUU 선박을 돕거나 조업 또는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2002년에는 검색을 한 후에 항만 접근이 허용되었으나 2006년 개정으로 항만 접근이 금지되었다.

회원국이 IUU 선박을 용선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리고 자국민에 의하여 선박 소유관계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선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2006년 개정에서는 회기 사이에 IUU 선박 목록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되었다. ICCAT에서는 어선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운반선의 목록도 작성하고 있다. 운반선의 경우 크기 제한이 없으며 ICCAT 어족 자원을 어획하는 선박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대서양과 중

20) ICCAT 홈페이지에는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NAFO, NEAFC 등 5개 RFMO의 IUU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1) ICCAT Record of Vessels over 20m, established by the Recommendation by ICCAT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n ICCAT Record of Vessels over 20m Authorized to Operate in the Convention Area [Rec.09-08].

부 지중해 참다랑어 어업을 하는 선박들에 대한 별도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ICCAT에서는 2007년 다른 RFMO의 IUU 선박목록과 통합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CCAMLR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IUU 선박이 포함된 목록을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목록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접근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항만 접근이 허용되는 경우는 강제집행, 불가항력, 조난에 따른 구조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회원국들에 IUU 어획물의 거래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법과 규칙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이 항만에 입항했을 때에는 어획물이 어디서 어획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기타 정보를 검사해야 하며 어획물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양륙과 환적을 거부해야 한다. 회원국은 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의 용선을 금지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며 목록에 있는 선박이 어획한 이빨고기의 수입·수출·재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목록에 있는 선박은 시험 조업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Ⅲ. 주요국가의 IUU 통제제도

#### 1. 미국

##### 1) IUU 통제 법적 근거

미국은 국내 및 국제 IUU를 통제하기 위해 맥너슨 스티븐스 법, 모라토리엄 보호법, 레이시 법, 공해 어업 이행법, 1967년 어업이 보호법 펠리 수정법, 해양 포유류보호법, 국제 돌고래 보존 및 보호법, 공해 유자망 어업 집행법 등 여러 법적 장치가 있다. 미국은 유엔 총회, FAO, RFMO, 양자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IUU에 대처하고 있다<sup>22)</sup>. 미국은 10개 다자 RFMO의 회원국이며 그 외에도 여러 양자 다자 협정의 맺고 있다. 미국은 FAO IUU 협약 협상 개시 전인 2006년 수산업법 개정<sup>23)</sup>을 통해 IUU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도록 하고 의회에 2년 주기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맥너슨 스티븐스 법의 서두인 발견 및 선언(findings)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과 기타 생물 해양자원의 지속성에 해를 가할 수 있고, 미국 수산업계에 불이익을 주는 기타 어업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추가하였다<sup>24)</sup>.

22) U.S. Department of Commerce,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 (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Implementation of Title IV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MSRA report)*, January 2009 p 22. <[http://www.nmfs.noaa.gov/msa\\_2007/docs/msra\\_biennial\\_report\\_011309.pdf](http://www.nmfs.noaa.gov/msa_2007/docs/msra_biennial_report_011309.pdf)>(2010년 11월 검색)

23) 미국 수산업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109 P.L. 479 121 Stat. 3575, 2007 Enacted H.R. 5946 109 Enacted H.R. 5946 참조.

24) 16 USC § 1801. Findings, purposes and policy

그리고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회에 법이 개정된 후 2년 후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의회에 국제적 이행에 관한 격년(2년 주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sup>25)</sup>. 보고서에는 (1) 미국이 공유하거나 미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협약의 대상인 국제해양 생물자원의 국제적인 또는 다른 기관이 관리 보존하는 모든 어족자원의 과잉어획, 과도 이용, 고갈, 멸종 위험 또는 위협 그러한 어족 자원 목록을 포함한 상태, (2) 제 609조 (a) 또는 제610조 (a)에 의해 확인된 선박의 특정 위반행위와 사후 조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목록, (3) 목록에 있는 국가들이 제609조 또는 제610조와 일관되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미국의 미국 법을 이행하고 국제적인 준수를 향상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한 노력에 대한 평가, (4) IUU를 종식하기 위한 국제 수산관리 기구의 노력을 강화하고 제608조와 일관된 국제 수준의 진척, (5) 보호 해양 생물 자원 관련 국제협약이 없거나 또는 관련 국제 수산 또는 보존 기구가 그러한 종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어업 관행을 종식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어업과 다른 관행에 의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미국의 조치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이 이행한 국제 수준에서 취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 NOAA의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에서는 2009년 1월 최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sup>26)</sup>. 보고서는 서론, 배경정보, MSRA 법 조항과 이행, 국제 생물해양 자원 지위에 관한 상태, IUU 어업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국제 수산 관리 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진척, 국제 감시와 이행, 보호 생물 해양자원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미국의 조치와 상응하는 국제 조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국제 협력과 보조, 제609조와 610조의 확인, 결론 등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UU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 2) IUU 확인 및 증명

미국 개정 수산업법에서 IUU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609조와 제610조이다<sup>27)</sup>. 제609조의 제목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즉 IUU어업이다<sup>28)</sup>. 제609조의 IUU는 국내 IUU가 아니라 국제 IUU이다. 확인, 통지, 협의, IUU 증서 절차, IUU 정의, 예산 승인 등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16 USC 1826h

26) MSRA report supra note.

27) 두 조항은 미국 법전에 16 USC 1826j와 16 USC 1826k로 정리되었다.

28) 16 USC 1826j. Illegal, unreported, or unregulated fishing

### 3) 외국 불법어업의 처벌 근거

미국 MSRA에서는 외국의 불법 어획물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레이시법(Lacey Act)에 근거를 두고 있다<sup>29)</sup>. 레이시법은 아이오와 주 하원의원인 John F Lacey가 제안했다<sup>30)</sup>. 레이시 의원은 개별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에 적용되지 않아 야생 동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법을 제안했다. 이 법은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통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외국 법(any foreign law)을 위반하여 채취, 소유, 운송, 판매된 어류나 야생 생물, 식물을 수입, 수출, 운송, 판매, 수수, 획득, 구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1)</sup>. 대한 민사 벌칙은 250불 이하의 벌금이고<sup>32)</sup> 형사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다<sup>33)</sup>. 레이시법은 1935년에 외국법 관련 내용이 삽입되었고<sup>34)</sup> 1981년에 외래어종인 Black bass의 미국 주(state)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과 통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sup>35)</sup>.

레이시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온두라스 왕새우(spiny lobsters) 사례이다<sup>36)</sup>. 익명의 팩스에 의하여 고발된 피고들은 온두라스의 왕새우 어업 관련 체장제한(5.5인치), 무게 기준을 위반했고, 가공과 포장 기준도 위반했다. 그리고 알을 가진 왕새우 포획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피고들은 1심에서 9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피고들은 레이시법에서는 외국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고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 법원에서는 레이시법의 정의 규정에서 어류, 야생 동물, 식물의 채취, 보유, 수입, 수출, 운송, 판매를 규율하는 법률(laws)<sup>37)</sup>이라고 되어 있어 법이 무엇을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법의 범위에 규칙까지 포함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을 했다. 항소 법원은 법의 사전적 정의에는 법이 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법(foreign law)의 범위에는 시행규칙이나 규칙이 포함되고 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의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입법 기록을 살펴보았다.

법원은 의회가 1981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법의 벌칙을 강화하였던 점을 주목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법만 포함되고 규칙이나 다른 규정이 포함

29) 16 USC § 3372. Prohibited acts

30) H.R. Rep. No. 97-276, at 7 (1981)

31) 16 USC § 3372 (a)(2).

32) 16 USC § 3372 (a)(2)

33) 16 USC § 3372 (d)(2)

34) H.R. Rep. No. 97-276, at 7.

35) S. Rep. No. 97-123, at 2 (1981), reprinted in 1981 U.S.C.C.A.N. 1748, 1749.

36) United States v. McNab, 331 F.3d 1228, 2003 U.S. App. LEXIS 10708 (11th Cir. Ala., 2003)

37) 16 U.S.C. § 3371(d) Regulate the taking, possession, importation, exportation, transportation, or sale of fish or wildlife or plants.”

되지 않는다면 법의 입법의도를 훼손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레이시법의 입법 목적과 동기를 근거로 온두라스 성문법이 아닌(nonstatutory provisions) 규정이나 결정이 외국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항소 법원은 대상이 되는 외국법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불법행위 후에 법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어도 레이시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 2. EU

### 1) EU IUU 규칙

#### (1) EU IUU 어업규칙의 배경

규칙의 연혁을 살펴보면 EU 위원회가 2007년 10월 IUU 어업 방지, 예방, 제거를 위한 시스템 설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고<sup>38)</sup>, 2008년 6월 EU 의회가 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구속력이 없는 IUU규칙을 채택했다<sup>39)</sup>. EU 이사회는 2008년 9월 구속력이 있는「위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억제 및 근절을 위한 EU 시스템 확립을 위한 이사회 규칙 제1005/2008호」를 채택했다<sup>40)</sup>. EU는 수출국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시아 지역,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중남미 지역 등에서 IUU 어업규칙 지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EU 이사회는 2009년 10월 22일 IUU 어업규칙 실시 규칙 1010/2009호를 채택하고 핸드북 제1판을 작성하여 관계 국가에 통지했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U IUU 규칙은 2010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어획증명서 적용대상 확대 및 세분화에 관한 내용과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와의 협상을 통해 EU 어획증명서 양식과 다른 어획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sup>41)</sup>. EU의 규칙은 2010년 5월 다시 개정되었는데 아이슬란드, 캐나다, 파로(FAROE ISLANDS) 등의 별도 어획증명서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42)</sup>.

38)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presented by the Commission), Brussels, 17 October 2007, COM(2007) 602 final, 2007/0223(CNS).

39) European Parliament Draft Report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COM(2007)0602-C6-0454/2007 · 2007/0223(CNS)), 10 March 2008, 2007/0223(CNS).

40)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of 29 September 2008 establishing a Community system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847/93, (EC) No 1936/2001 and (EC) No 601/2004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1093/94 and (EC) No 1447/1999.

4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86/2010 of 29 January 2010 amending Annex I to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as regards the definition of fishery products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 as regards exchange of information on inspections of third country vessels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n catch certificates

42)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95/2010 of 7 May 2010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010/2009 as regards administrative arrangements on catch certificates

## (2) IUU 규칙의 적용범위

EU IUU 규칙은 EU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어업, EU 선반과 다른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한 어업, 제삼국의 관할권 내에서 행해진 어업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린란드,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외국국가의 해양수역과 EU 국가의 국외 영토는 제삼국의 해양수역으로 취급한다<sup>43)</sup>. 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은 컨테이너 선박을 제외한 어선, 운반선, 지원선 등 거의 모든 선박이 포함된다<sup>44)</sup>. 적용되는 제품은 EU HS 코드 03류로<sup>45)</sup>신냉·냉동을 포함한 수산물과 갑각류, 패류, 그리고 어류와 갑각류·패류 조제 제식품인 1604호<sup>46)</sup>와 1605호<sup>47)</sup>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다<sup>48)</sup>.

## (3) IUU 규칙의 주요 내용

EU IUU 규칙에 포함된 주요 조치들은 RFMO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어업 규칙과 조치들과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비협력 제삼국에 대한 무역 제한 관련 조치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 기준보다 강화되었다. IUU 규칙의 내용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제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은 제삼국의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어획증명요구, EU IUU 선박 목록 확립, 비협력적 제삼국 목록 작성 등이다.

### ① 제삼국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

규칙 제2장은 항만국 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항만국 통제는 EU 회원국 항만에 접근하여 양륙 및 환적을 하려는 제삼국 어선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삼국 어선의 양륙 및 환적은 지정된 EU 회원국 항만에 할 수 있다. EU가 지정한 항만은 약 150개 정도이다<sup>49)</sup>. 제삼국의 어선의 선장은 EU의 기관에 입항 3일 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50)</sup>. 제삼국 선박에 어획물이 있으면 어획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RFMO에서 채택된 어획증명서와 항만국 통제제도를 준용한다<sup>51)</sup>. 제삼국의 선박은 규칙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획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항만에 접근이 허용된다. 회원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만 접근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사나 확인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산물을 권한 있는 당국의 통제 아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수산제품은 필요한 정보

43) IUU Regulation, art. 1(3).

44) IUU Regulation, art. 2(5).

45)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46) Prepared or preserved fish; caviar and caviar substitutes prepared from fish eggs.

47)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prepared or preserved.

48) IUU Regulation. art 2(8).

49) List of ports in EU Member States where landings and transshipment operations of fishery products are allowed and port services are accessible for third-country fishing vesse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1005/2008 (2009/C 320/06)

50) Ibid. art 6(1).

51) Ibid. art 6(2).

를 받거나 검사 확인 후에 판매하거나 인도하거나 운송할 수 있다. 양륙 후 14일 이내에 검사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항만국은 수산물을 압수하여 국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저장 비용은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sup>52)</sup>.

EU 회원국의 항만을 사용하거나 환적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삼국 어선의 선장은 양륙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어획 일시와 장소와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sup>53)</sup>. EU 회원국은 3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EU 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삼국 선박의 양륙과 환적 물량을 통보해야 한다<sup>54)</sup>. EU 회원국은 매년 제삼국 어선이 양륙 및 환적하는 물량의 5% 이상을 검사하여야 한다<sup>55)</sup>. EU 회원국은 회원국 경보시스템에 의하여 보고된 선박이나 불법어업이 목격되었거나 추정된 선박, RFMO IUU 목록에 있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전수 검색을 하여야 한다<sup>56)</sup>. 검사 대상에는 서류, 어구, 어획물과 기타 IUU 어업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포함한다<sup>57)</sup>. 검사 결과 제 3국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EU 회원국은 양륙과 환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sup>58)</sup>. 양륙과 환적을 거절한 회원국은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적국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IUU 혐의 선박이 공해나 제삼국의 해역에 있는 경우 회원국은 기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국제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sup>59)</sup>.

## ② 어획 증명 요구사항

IUU 규칙 제3장은 IUU 어업으로부터 얻어진 제품은 수입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이를 위해 이력추적(traceability)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EU로의 수입은 선장이 작성하고 선박기국이 확인을 한 어획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어획 증명서는 규칙 부속서 II로 되어 있는데 선박명, 면허번호, Inmarsat 번호 등 기본정보, 제품에 관한 정보, 수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데 CCAMLR, IOTC, ICCAT, IATTC, CCSBT 등의 어획증명서나 통계 서류 형식과 유사하다.

간접 수입과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의 경우에도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간접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기국의 수입증명서와 제삼국에서는 하역, 선적, 제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만을 했고 작업과정을 감시했다는 제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sup>60)</sup>. 가공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제삼국 가공공장에서 발행하

52) Ibid. art 7(3).

53) Ibid. art 8(1)

54) Ibid. art 8(2), (4).

55) Ibid. art 9(1)

56) Ibid. art 9(2)

57) Ibid. art 10(1).

58) Ibid. art 11.

59) Ibid. art 11(4).

60) Ibid. art 14(1).

고 제삼국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가공 전후 수산물의 정확한 증량과 상태, 가공품은 선적국에서 발행한 어획증명서에 있는 어획물로 가공했다는 사실, 원본 어획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sup>61)</sup>. RFMO에서 채택한 어획 증명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sup>62)</sup>. 그러나 RFMO 어획증명서를 도입한 어종은 참치, 이빨고기, 청새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EU IUU 규칙은 회원국의 업무 수행 기관에 어획증명서 인정과 다른 정보와 관련하여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은 항구에서 어선의 검색, 제품의 검사, 자료·서류의 진위성 확인, 회계 기록 검사, 컨테이너, 제품 저장 장소 등 운송 수단 검사 등의 통제 수단이 있다.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선박기국 및 제품이 간접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IUU 선박 목록

EU IUU 규칙의 중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EU와 회원국에 의하여 IUU어업 행위가 확인된 IUU 선박 목록의 작성 및 유지이다<sup>63)</sup>. IUU 목록은 규칙의 준수, 어획 자료, 무역 정보, 선박 등록 자료, RFMO 어획 통계 서류, IUU 선박 추정 신고 또는 보고, RFMO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IUU 목록에는 RFMO에 의하여 작성된 IUU 목록을 포함한다<sup>64)</sup>. EU IUU 목록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업허가 요구 금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

EU는 2010년 5월 IUU 선박 목록을 발표했다<sup>65)</sup>. EU IUU 선박 목록 규칙에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IUU 어업에 종사한 선박목록을 확인할 때까지 RFMO에서 채택한 선박 목록을 포함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선박목록에는 IMO 선박인식 번호, 선박명, 기국, 목록을 채택한 RFMO가 나와 있다. EU 선박목록 규칙에 따라면 IUU 선박목록을 채택하고 있는 RFMO는 NEAFC, NAFO, SEAFO가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CCAMLR, SEAFO도 공동으로 IUU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IUU 선박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RFMO는 ICCAT, IOTC, IATTC, WCPFC이다. IATTC가 24척으로 가장 많고, ICCAT가 21척, CCAMLR, SEAFO가 18척, NEAFC, NAFO, SEAFO가 11척, IOTC가 7척, WCPFC 5척 등 총 86척이다. 국가별로 국가 미상이 32척으로 가장 많고 파나마가 13척(무국적으로 바뀌기 전국적 포함), 인도네시아 15척, 토고 10척 등의 순서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이 2척씩 포함되어 있다.

61) Ibid. art 14(2).

62) Ibid. art 13(1).

63) Ibid. art 27.

64) Ibid. art 30.

6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68/2010 of 28 May 2010 establishing the EU list of vessels engaged i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http://eur-lex.europa.eu/LexUriServ.do?uri=OJ:L:2010:131:0022:0026:EN:PDF>>(2010년 11월 19일 검색)



## 2) 각국의 EU IUU 규칙에 대한 대응

### (1) 일본

일본은 2009년 12월 EU IUU 규칙의 어획증명서 발급과 운영을 위한 요령을 제정했고 2010년 7월 29일 개정했다<sup>66)</sup>. 요령에서는 정의, 어획증명서와 가공증명서, 어획증명서의 발급수속, 가공증명서의 발급수속, 수산청에 어획증명서 등의 신청방법, 허위보고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U 회원국에 수산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제삼국을 경유하여 EU에 간접수출을 하려는 자 포함)는 일본산 원료를 사용한 수산 제품(일본 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 수산 제품 포함)은 어획증명서 발급을 받고, 외국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수산제품은 가공 수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의 요령 별지 1에는 어획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는 수산제품을 정하고 있는데 관상어, 민물 수산 제품, 갑각류 등과 조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 10-05(2008)의 규정에 의한 어획증명제도, 대서양 참치 보존 국제위원회가 채택한 ICCAT 권고 08-12 규정에 의한 ICCAT 참치 어획증명서 프로그램과 남방 참치 보존 위원회가 채택한 CCSBT 어획증명서제도 대상 종류의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EU에 수출하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어획증명서는 수산청이 발급하고 도도부현이 해당 도도부현 소관어업에 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청에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제 총 통수 20톤 미만의 선박 등 소규모 어선이 어획한 경우에는 간이 어획증명서 양식에 의한 어획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2) 미국

미국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어획하여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NOAA 해산물 검사 프로그램(Seafood Inspection Program)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sup>67)</sup>. NOAA에서는 EU와 미국 정부의 특정 수요에 부합하는 어획증명서를 개발하기 위해 협상했다. 미국과 EU는 2009년 11월 미국 수산물에 사용할 어획증명서에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수산청(NOAA Fisheries Service)이 해산물 검사 프로그램은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미국의 어획증명서는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이 미국의 수산업법(MSRA)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수산물이 적법하게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6) EU의 IUU漁業規則に基づく漁獲證明書及び加工證明書の發給に關する 取扱要領, 水漁 第2255號 制定 平成 21年 12月10日 <[http://www.jfa.maff.go.jp/kakou/eu/pdf/20100729\\_kaiseiyouryou.pdf](http://www.jfa.maff.go.jp/kakou/eu/pdf/20100729_kaiseiyouryou.pdf)>(2010년 11월 18일 검색)

67) NOAA Seafood Inspection Program, EU IUU FAQs Update, <[http://www.seafood.nmfs.noaa.gov/IUU\\_FAQs.html](http://www.seafood.nmfs.noaa.gov/IUU_FAQs.html)>(2010년 11월 19일)

EU IUU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간소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EU 어획증명서는 무역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국경 또는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수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검사 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sup>67)</sup>. EU 규칙에서는 선박으로 운송될 경우 도착 3일 전에 어획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도착 4시간 전에 송부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배송단위로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5개 어종이 넘을 경우 별도의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냉과 가공 수산물의 수입자가 같을 때에는 하나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미국 수산물이 제삼국을 경유해 EU로 가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수산물이 제삼국을 경유해서 EU로 가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와 EU IUU 규칙 부속서 IV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부속서 IV는 제삼국의 수출업자가 서명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 EU에 제출해야 한다.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후에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 변경사항을 통보해 EU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3) 한국

한국은 EU IUU 어업규칙에 따른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해 2009년 12월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를 공포했다<sup>68)</sup>. EU지역으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품질검사원장)에게 어획증명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에는 어획물의 구성에 따라 관련 서류를 어획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sup>69)</sup>. 어획증명서에 대한 승인신청 시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각 화물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다른 어획물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화물이 구성된 경우에는 간편 어획증명서 작성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어획물 당 별도의 어획증명서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EC IUU 통제법」 부속서 IV의 수산물 가공증명서에 수출국에서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승인을

67) NOAA Seafood Inspection Program, How to Request EU Export Health Certificates and Catch Documents<[http://www.seafood.nmfs.noaa.gov/Request\\_Cert.html](http://www.seafood.nmfs.noaa.gov/Request_Cert.html)>(2010년 11월 19일 검색)

68) 농림수산물부 예규 제28호. 2009.12.29 제정.

69) 제4조 제1항.

70) 제4조 제4항.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가공공장(가공선 포함)은 반드시 EU에 등록된 가공 공장이어야 한다<sup>71)</sup>. 품질검사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EU에서 정한 IUU 어업활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국제수산기구 또는 지역수산기구의 불법어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경우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말미암은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sup>72)</sup>.

선박이 모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공해 상에서 조업하는 경우와 같이 기국의 항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국에 있는 대표자가 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sup>73)</sup>. 품질검사원장은 EU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수산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예규에 준하여 승인할 수 있다<sup>74)</sup>.

#### IV. 결론 및 정책건의

IUU 어업은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sup>75)</sup>. 한국은 지금까지 RFMO와 주요 국가의 IUU 조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제는 IUU어업에 대한 국제기구와 세계 주요 국가의 조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 또는 주요 국가의 IUU에 대한 조치에 단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복잡한 IUU 어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연안국, 항만국, 어획물이 판매되는 국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와 정부 간 기구, 수산 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 한국도 선박기국과 항만국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불법어획물로 말미암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 기국으로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이 IUU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IUU 선박 목록 작성, 항만국 통제, 모니터링·통제·감시(MSC), 시장관련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국내제도에 수용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최근 IUU 어업 통제를 위한 조치의 효과를 경험했다. 한국은 러시아와「해양 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

71) 제5조 제1항.

72) 제6조.

73) 제11조.

74) MSRA report supra note p 12.

7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3호

하기 위한 고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했다<sup>76)</sup>. 고시는 항만지정, 입항신청, 정보 공유 등 EU나 FAO 항만국 통제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전 입항 통지서도 RFMO나 EU의 통지 서식과 유사하다. 고시의 파급효과가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러시아 살아 있는 개의 수입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국가와 RFMO의 IUU 통제 제도는 원양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양어업의 관리비용증가가 예상된다. 입항 3일 전 통보와 항만국 조치를 대비한 각종 서류 비치 등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검색관이 많으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검색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양륙 또는 환적을 하고 출항을 해야 하는 어선은 항만에서 대기해야 하므로 조업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조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행료를 지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항만 당국과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NPO 설립과 WCPFC의 북방 참다랑어 어획제한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근해어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FMO를 만들고 어획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와 어업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규제 대상 업종이 되고 어획노력을 감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2. 전 세계적 항만국 조치 시행 대비

RFMO 및 주요국가의 IUU 통제 제도의 핵심은 항만국 통제와 어획증명서 제도이다. 어획증명서를 기본으로 항만국에서 검색하고 IUU 어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어획증명서와 항만국 통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동안 RFMO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나 EU에서 두 제도를 모두 2010년부터 전격 도입했다. 2009년 FAO 항만국 통제 조치 협정의 채택으로 어획증명서 제도와 항만국 조치의 전 세계적 도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국 조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이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항만국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담당관과 연락처가 항만국에 제공되어야 한다. 주변국이 항만국 조치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이 항만국 조치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IUU 의심 선박이 한국으로 입항하게 되며 결국 주변국의 압력과 비난에 의해 항만국 조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한국이 회원국인 NAFO에서는 항만국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 조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3호.

둘째, 항만검색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하다. 항만국 조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항만을 지정해야 한다.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어선이 입항하는 모든 항만에서 동시에 항만국 검색을 시행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 검색 인력은 수입 수산물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과는 구별되는 능력이 요구된다. 선박, 수산물, 어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학, 해양수산연수원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간 교육 시스템 확립 필요하다. 수산업계가 항만국 조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주요 국가와 RFMO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원양산업협회, 대학 등 교육기관이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동아시아 항만국 조치 협정 체결

상선 항만국 통제는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어선 항만국 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NAFO와 NEAFC의 경우에도 지역 국가들이 협력하여 PSC를 동시에 시행하고 공동의 IUU목록을 도입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항만국 조치 협정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세계 3대 경제권역에 속하지만 수산업 측면에서도 세계 1위의 생산력과 세계 2위의 소비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모두 IUU 어업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FAO 항만국 조치 협정이 채택되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행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FAO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항만국 조치 제도를 도입하면 이 지역의 자원보호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통합 RFMO IUU 선박 목록 및 어획증명서 발급 제도 구축

ICCAT와 WCPFC 등 주요 RFMO에서는 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EU와 미국도 RFMO의 선박목록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IUU 선박 목록에는 중국과 대만의 선박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법 어획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IUU 어업의 시장관련 조치 가운데 핵심적인 제도이다. 어획증명서를 통해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traceability)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RFMO에서 참치종류를 중심으로 CDS 제도를 시행해 왔다. EU는 세계 최초로 모든 어종에 대한 CDS 제도를 도입했다. CDS 제도는 WTO 체제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EU 제도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조하고 있다. EU의 CDS 제도를 주요 국가들은 지켜보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여러 국가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RFMO에서 요구하는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두 개와 EU의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고시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모든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개의 고시를 통합하여 어획증명서 발급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꽁치, 조기, 고등어 등 민감 어종과 러시아 수산물에 대하여 CD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DS 제도 도입은 주변국의 IUU를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주변국의 조업 정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한국의 EU IUU 규칙 이행관련 제도 개선

다른 나라의 EU 규칙 이행상황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온라인 발급절차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양어선의 경우에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어획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미국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EU 규칙상의 어획증명서와 다른 별도의 어획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이외도 캐나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이 별도의 어획증명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사항과 지역수산기구의 IUU 선박 목록을 자동 검사하면 불법어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획증명서 발급제의 대상 목록 개정이 필요하다. EU는 2010년 1월에 IUU 규칙을 개정하여 어획증명서 발급 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일본은 목록의 개정을 위해 7월 29일 개정을 했다. 일본은 HS 코드를 나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관상어, 치어 및 유생을 이용하여 생산된 양식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 제품(원어 포함), 담수 수산 제품(원어 포함), 수서무척추동물의 가루·어분·피레트, 갑각류, 오징어와 낙지 이외의 수서 무척추동물과 치어와 유생을 사용하여 생산된 양식 수산물을 원료로 한 조제품, 담수수산 제품의 조제품, 수서무척추동물의 조제품(갑각류와 조개, 가리비, 굴, 소라 이외의 연체동물의 조제품 제외)의 조제품 등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2009년 12월 제정 이후에 개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발급기관의 확대이다. 일본의 경우 수산청 허가사항인 것은 수산청에서 발급하고 도도부현 허가사항은 지방에서 하고 있다. 온라인을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발급지역 확대를 할 필요가 없다.

넷째, 앞서도 설명했듯이 모든 국가와 지역에 적용되는 통합 어획증명서 발급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 '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11조는 EC 지역 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여러 지역수산기구와 국가에서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현재의 예규를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여 통합적인 어획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발급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 참고문헌

- Bray, K., *A Global Review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2006.  
<[www.fao.org/DOCREP/005/Y3274E/y3274e08.htm](http://www.fao.org/DOCREP/005/Y3274E/y3274e08.htm)>(2010년 11월 1일 검색).
- FAO, *Database on Port State Measures*, 2010. <<http://www.fao.org/fishery/psm/en?>>(2010년 11월 1일 검색).
- NOAA Seafood Inspection Program, *EU IUU FAQs Update*, 2010. <[http://www.seafood.nmfs.noaa.gov/IUU\\_FAQs.html](http://www.seafood.nmfs.noaa.gov/IUU_FAQs.html)>(2010년 11월 19일 검색).
- \_\_\_\_\_, *How to Request EU Export Health Certificates and Catch Documents*, 2010.  
<[http://www.seafood.nmfs.noaa.gov/Request\\_Cert.html](http://www.seafood.nmfs.noaa.gov/Request_Cert.html)> (2010년 11월 19일 검색).
- Swan J., *Port State Measures To Combat IUU Fish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s, Ocean and Fishery LAW*, Núm. VII – 1, September 2006. <[http://vlex.com/source/sustainable-development-law-policy-1620/issue\\_nbr/%23VII-1](http://vlex.com/source/sustainable-development-law-policy-1620/issue_nbr/%23VII-1)> (2010년 11월 10일 검색).
- United States v. McNab, 331 F.3d 1228, 2003 U.S. App. LEXIS 10708 (11th Cir. Ala., 2003).
- US Department of St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010. <<http://www.state.gov/g/oes/ocns/fish/illegal/>>(2010년 11월 3일 검색).
- U.S. Department of Commerce, *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403 (a)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Implementation of Title IV of the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 January 2009.
- S. Rep. No. 97 – 123, at 2 (1981), reprinted in 1981 U.S.C.C.A.N. 1748, 1749.
- FAO <<http://www.fao.org/>>
- NOAA NMFS <<http://www.nmfs.noaa.gov/>>
- EU <[http://ec.europa.eu/fisheries/index\\_en.htm](http://ec.europa.eu/fisheries/index_en.htm)>
- 미국 국무부 <<http://www.state.gov>>
- 일본 수산청 <<http://www.jfa.maff.go.jp/>>



## **A Study on the IUU Governance System of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jor State**

Min-Gyu Park

### **Abstract**

The FAO reports that IUU fishing activities have widespread economic, social, and management consequences, including depriving legitimate fishers of harvest opportunities. It affects all fisheries from small scale to industrial. It also affects the ability of governments to support sustainable livelihoods for fishers and, more broadly, to achieve food security.

The complexity of IUU requires various measures to combat IUU fishing such as adoption of IUU vessel lists; stronger port State controls; improved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implementation of market-related measures to help ensure compliance; and capacity-building assistance. Trade and market measures reduce opportunities for IUU fishing activities by precluding or impeding access to markets for IUU produ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CCAT, CCAMLR, and IATTC, have put in place trade tracking programs or catch documentation schemes, and WCPFC is considering such a program. Vessel lists assist enforcement authorities in determining which vessels are or are not authorized to be fishing or conducting fishing support activities in specified areas. A number of RFMOs maintain records of IUU vessels: CCAMLR, IATTC, ICCAT, NAFO, NASCO, NPAFC, WCPFC.

Section 608 of the US MSRA calling on the Secretary of Commerc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s and any relevant advisory committees, to take actio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onserving and managing stocks under their jurisdiction. EU IUU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10,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highly complex multi-channel fisheries supply system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in an effort to improve global fisheries sustainability.

Key words : IUU fishing, EC IUU regulation, MSRA, IUU vessel lists, Catch documentation schemes, RFMO